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기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45

발의연월일: 2022. 7. 1.

발 의 자: 강기윤·김용판·구자근

윤주경 • 이종성 • 최형두

백종헌 • 김선교 • 박성중

임병헌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2년 새정부는 디지털을 중심에 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우리나라가 디지털 강국으로 도약하고 ICT 선도국을 넘어 글로벌 디지털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프트웨어 부문 국정과제이행계획을 수립하였음.

현행법에는 소프트웨어의 품질확보 및 유통 촉진을 위하여 소프트웨어에 관한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는 의무조항이 아님.

새정부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명시된 "공공기관의 민간 상용소프 트웨어 구매 의무화"를 법에 도입하여 공공기관에 의한 IT서비스 방 식의 용역을 통해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민간의 상용SW를 우선구매함으로써,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생태계육성을 도모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민간 상용소프트웨어를 우선구매대상으로 하여,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의무화와 품질을 갖춘 조달물자의 구매・공급의 효율화를 달성하고자 함. 이로 인해 향후 공공기관의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의무화에 따른 소프트웨어 산업 육성은 물론 공공기관의 조달물자 구매행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안 제20조제4항 등).

법률 제 호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민간 상용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20조제4항 중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민간 상용소프트웨어"로, "요청할 수 있다"를 "요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u><신 설></u>	16. "민간 상용소프트웨어"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20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제20조(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등)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4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을 받은	민간 상용소프트웨어
<u>제품</u>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제품으로 한정한다)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3	
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한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하도록 요	<u>요청하여야 한다</u> .
청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